

제공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 지역1부

**도색작업 중 갠트릭크레인과 매니폴드 덮개 사이에 끼임(사망1)**

**【재해발생개요】**  
 2020. 5. 29.(금), 16:07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소재한 00조선(주) 옥외 작업장에서 가스매니폴드 도색(페인트칠)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, 이동하는 갠트릭크레인과 가스매니폴드의 덮개 사이에 끼인 후 사망한 재해임

**【재해발생 현장】**



[사진1] 재해발생 장소

[사진2] 재해자 발견 장소

**【재해발생원인】**

- 안전한 통로 미확보
  - 재해발생 장소의 경우, 크레인의 주행로이므로 작업자와 부딪치는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자들이 통행하는 이동통로로 사용되고 있음
- 접촉방지조치 미실시
  - 크레인이 주행할 수 있는 주행로 상에서 가스매니폴드 보수작업을 실시하면서, 크레인으로부터 해당 작업자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운전정지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음

**【재해예방대책】**

- 안전한 통로 확보
  - 주행 크레인과 설비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, 그 폭을 0.6m 이상으로 하여야 함. 다만, 그 통로 중 건설물 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.4m 이상으로 할 수 있음
- 접촉방지조치 실시
  - 주행 크레인과 설비 사이의 통로 또는 주행궤도 상에서 정비·보수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, 그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가 주행하는 크레인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크레인의 운전을 정지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함
- 크레인 운전자 안전조작교육 실시
  -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에 대하여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취급하는 작업자에게는 작동요령 및 주행 중 작업자와의 부딪침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켜야 함

□ **관련사진**



[사진1] 재해발생장소(크레인/매니폴드 사이)

[사진2] 롤러가이드와 덮개 사이 간격(25cm)